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4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김혜지, 김경훈, 김규남,
김동욱, 문성호, 송경택,
옥재은, 윤영희, 이상욱,
이효원 의원(10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성준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박상혁,
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
박철성, 소영철, 신복자,
심미경, 유만희, 유정인,
윤기섭, 윤종복, 이병운,
이종태, 이종환, 임규호,
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
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
허 훈, 홍국표, 황유정,
황철규 의원(43명)

1. 제안이유

-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현행 30% 범위에서 50% 범위로 상향 조정하여 호텔 등 숙박업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을 경감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2(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)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현행 30% 범위에서 50% 범위로 상향 조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중 “30%”를 “50%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